

## 신구조문 대비표(어린이제품안전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현 행	개 정 (안)	비고
<p><b>유아용 섬유제품</b> (Textile products for infant)</p>	<p><b>유아용 섬유제품</b> (Textile products for infant)</p>	
<p><b>1. 적용범위</b> 이 기준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섬유제품을 말하며 적용대상은 다음 3. 세부분류에 한한다.</p>	<p><b>1. 적용범위</b> 이 기준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u>맞춤복은 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가장복은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u></p>	<p>- 유아용 섬유제품의 사용연령을 설명 - 그간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놀이용 가장복을 적용대상에서 제외</p>
<p><b>2. 인용표준</b>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li> <li>·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li> <li>·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li> <li>· KS K 0739 섬유제품 _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_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li> <li>· KS K ISO 3071 텍스타일 _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li> <li>· KS K ISO 3175-1 텍스타일 _ 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 _ 제1부 : 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li> <li>·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_ <u>포름알데히드</u> 측정 _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u>포름알데히드</u>(증류수 추출법)</li> <li>· KS K ISO 6330 텍스타일_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li> </ul>	<p><b>2. 인용표준</b>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li> <li>·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li> <li>·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li> <li>· KS K 0739 섬유제품 _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_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li> <li>· KS K ISO 3071 텍스타일 _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li> <li>· KS K ISO 3175-1 텍스타일 _ 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 _ 제1부 : 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li> <li>·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_ <u>폼알데하이드</u> 측정 _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u>폼알데하이드</u>(증류수 추출법)</li> <li>· KS K ISO 6330 텍스타일 _ 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li> </ul>	<p>- 표준명 표시양식을 KS 표준체제와 부합화</p> <p>- 영문의 국문표기 정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p> <p>·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_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_Specifications</p> <p>· ISO 18254-1 Textiles_Method for the detection and determination of alkylphenoethoxylates (APEO)-Part1 : Method using HPLC-MS</p> <p>&lt;신설&gt;</p> <p>·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p> <p>·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족제품</p> <p>·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p> <p>·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p> <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p> <p>·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p> <p>&lt;신 설&gt;</p>	<p>·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p> <p>·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 ___ 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 ___ Specifications</p> <p>· ISO 18254-1 Textiles ___ Method for the detection and determination of alkylphenoethoxylates (APEO) ___ Part1 : Method using HPLC-MS</p> <p>· KS C IEC 62321-6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6부: GC-MS에 의한 고분자 내 존재하는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의 분석</p> <p>·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p> <p>·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족제품</p> <p>·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p> <p>· <u>안전기준준수</u>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p> <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p> <p>· <u>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u></p> <p><u>3. 용어의 정의</u></p> <p><u>3.1. “섬유제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피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u></p> <p><u>3.2 “조성섬유”라 함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을 말한다.</u></p> <p><u>3.3 “혼용률”이라 함은 조성섬유가 2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 (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u></p> <p><u>3.4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u></p> <p><u>3.5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u>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에 적합하여야 한다.</u></u></p> <p><u>3.6 “맞춤복”이라 함은 개인을 위해 형태, 재료, 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주문·제작하는 의복을 말한다.</u></p>	<p>- 방염제 시험방법의 국제표준 부합화</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안전기준 제·개정 사항 반영</p> <p>-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용어의 정의를 이 기준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그대로 인용</p> <p>-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b>3. 세부분류</b></p>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유아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p> <table border="1" data-bbox="170 280 893 1398">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외의류</td> <td>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u>커버올스</u>, 점퍼, 조끼, <u>툭바</u>, 우주복, <u>가디건</u>,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u>미술가운</u>, 넥타이, 벨트류, 멜빵</td> </tr> <tr> <td>중의류</td> <td>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u>방한대</u></td> </tr> <tr> <td>내의류</td> <td>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풀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td> </tr> <tr> <td>침구류</td> <td>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u>카펫</u>,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td> </tr> <tr> <td>신발류</td> <td>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td> </tr> <tr> <td>양말류</td> <td>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td> </tr> <tr> <td>장갑류</td> <td>장갑, 팔토시</td> </tr> <tr> <td>모자류</td> <td>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td> </tr> <tr> <td>가방류</td> <td>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td> </tr> <tr> <td>신생아용품</td> <td>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u>풋머프</u>,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td> </tr> </tbody> </table> <p>* <b>비고</b> : 상기의 종류에 없는 섬유제품 또는 신유형 섬유제품이 보통의 유아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사용환경, 용도 등을 고</p>	구분	종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u>커버올스</u> , 점퍼, 조끼, <u>툭바</u> , 우주복, <u>가디건</u> ,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u>미술가운</u> ,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u>방한대</u>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풀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u>카펫</u> ,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u>풋머프</u> ,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p><b>4. 세부분류</b></p>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유아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p> <table border="1" data-bbox="965 280 1715 1398">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외의류</td> <td>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u>커버올</u>, 점퍼, 조끼, <u>토펜</u>, 우주복, <u>카디건</u>,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u>미술가운</u>, 넥타이, 벨트류, 멜빵</td> </tr> <tr> <td>중의류</td> <td>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u>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u><sup>1)</sup></td> </tr> <tr> <td>내의류</td> <td>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풀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td> </tr> <tr> <td>침구류</td> <td>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u>매트류(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sup>2)</sup>는 제외)</u>,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u>카펫</u>,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td> </tr> <tr> <td>신발류</td> <td>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td> </tr> <tr> <td>양말류</td> <td>양말, <u>타이츠</u>,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td> </tr> <tr> <td>장갑류</td> <td>장갑, 팔토시</td> </tr> <tr> <td>모자류</td> <td>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td> </tr> <tr> <td>가방류</td> <td>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td> </tr> <tr> <td>신생아용품</td> <td>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u>풋퍼프</u>,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td> </tr> </tbody> </table> <p><b>주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b></p> <p>- 제품명을 개정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부합화하여 수정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사항 반영  - 매트류와 관련하여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제정사항 반영  - 용어를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라 수정  - 용어를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라 수정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p>	구분	종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u>커버올</u> , 점퍼, 조끼, <u>토펜</u> , 우주복, <u>카디건</u> ,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u>미술가운</u> ,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u>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u> <sup>1)</sup>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풀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u>매트류(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sup>2)</sup>는 제외)</u> ,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u>카펫</u> ,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u>타이츠</u> ,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u>풋퍼프</u> ,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구분	종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u>커버올스</u> , 점퍼, 조끼, <u>툭바</u> , 우주복, <u>가디건</u> ,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u>미술가운</u> ,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u>방한대</u>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풀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u>카펫</u> ,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u>풋머프</u> ,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구분	종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u>커버올</u> , 점퍼, 조끼, <u>토펜</u> , 우주복, <u>카디건</u> ,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u>미술가운</u> ,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u>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u> <sup>1)</sup>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풀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u>매트류(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sup>2)</sup>는 제외)</u> ,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u>카펫</u> ,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u>타이츠</u> ,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u>풋퍼프</u> ,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려하여 [표1] 제품의 구분과 종류를 적용한다.</p> <p><b>4. 안전요건</b></p> <p><b>4.1 일반구조</b></p> <p><b>4.1.1 작은부품 부착강도 (5.1.1 참조)</b> 유아용 섬유제품에 5.1.1.1에 따라 시험 시 통과되는 작은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5.1.1.2에 따른 인장시험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1.1.3에 따른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작은부품이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단추, 스냅, 구슬, 비즈, 스팅글, 핫픽스 등을 말하며, 섬유, 실, 고무줄 및 끈, 잔털 등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p> <p><b>4.1.2 코드 및 조임끈 (5.1.2 참조)</b>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p> <p><b>4.2 유해물질 안전요건</b>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 미만을 제외하는 문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을 적용 대상으로 본다.).</p>	<p><u>기준을 추가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u></p> <p><b>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제4부. 바닥매트를 따른다.</b></p> <p><b>3.</b> 상기의 종류에 없는 섬유제품 또는 신유형 섬유제품이 보통의 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사용환경, 용도 등을 고려하여 [표 1] 제품의 구분과 종류를 적용한다.</p> <p><b>5. 안전요건</b></p> <p><b>5.1 물리적 안전요건</b></p> <p><b>5.1.1 작은부품 부착강도 (6.1.1 참조)</b> 유아용 섬유제품에 6.1.1.1에 따라 시험 시 통과되는 작은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6.1.1.2에 따른 인장시험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1.1.3에 따른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작은부품이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작은부품은 기능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단추, 스냅, 구슬, 비즈, 스팅글, 핫픽스 등을 말하며, 섬유, 실, 고무줄 및 끈, 잔털 등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p> <p><b>5.1.2 코드 및 조임끈 (6.1.2 참조)</b>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p> <p><b>5.2 유해물질 안전요건</b>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 미만을 제외하는 문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을 적용대상으로 본다.).</p>	<p>안전기준 제정사항 및 매트류와 관련하여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제정사항 반영</p> <p>- 조항번호 및 조항명 변경</p> <p>- 문구 수정</p> <p>- 띄어쓰기</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유해물질명</th> <th style="width: 30%;">허용치</th> </tr> </thead> <tbody> <tr> <td>폼알데하이드 (mg/kg) <sup>1)</sup></td> <td>20 이하</td> </tr> <tr> <td rowspan="2">유기주석화합물 (mg/kg) <sup>2)</sup></td> <td>DBT(dibutyltin)</td> <td>1.0 이하</td> </tr> <tr> <td>TBT(tributyltin)</td> <td>0.5 이하</td> </tr> <tr> <td>아릴아민 (mg/kg) <sup>3)</sup></td> <td>각각 30 이하</td> </tr> <tr> <td>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sup>4)</sup></td> <td>0.1 이하</td> </tr> <tr> <td>방염제 <sup>5)</sup></td> <td>사용하지 말 것</td> </tr> <tr> <td>총 납 함유량(mg/kg) <sup>6)</sup></td> <td><u>90 이하</u></td> </tr> <tr> <td>총 카드뮴 함유량(mg/kg) <sup>6)</sup></td> <td>75 이하</td> </tr> <tr> <td>알러지성 염료 (mg/kg) <sup>7)</sup></td> <td>각각 50 이하</td> </tr> <tr> <td>pH <sup>1)</sup></td> <td>4.0 ~ 7.5</td> </tr> <tr> <td>니켈(Ni)의 용출량 (<math>\mu\text{g}/\text{cm}^2/\text{week}</math>) <sup>8)</sup></td> <td>0.5 이하</td> </tr> <tr> <td>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sup>1),11)</sup></td> <td>100 이하</td> </tr> <tr> <td>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sup>9)</sup></td> <td>0.1 이하</td> </tr> </tbody> </table>	유해물질명	허용치	폼알데하이드 (mg/kg) <sup>1)</sup>	2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sup>2)</sup>	DBT(dibutyltin)	1.0 이하	TBT(tributyltin)	0.5 이하	아릴아민 (mg/kg) <sup>3)</sup>	각각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sup>4)</sup>	0.1 이하	방염제 <sup>5)</sup>	사용하지 말 것	총 납 함유량(mg/kg) <sup>6)</sup>	<u>90 이하</u>	총 카드뮴 함유량(mg/kg) <sup>6)</sup>	75 이하	알러지성 염료 (mg/kg) <sup>7)</sup>	각각 50 이하	pH <sup>1)</sup>	4.0 ~ 7.5	니켈(Ni)의 용출량 ( $\mu\text{g}/\text{cm}^2/\text{week}$ ) <sup>8)</sup>	0.5 이하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sup>1),11)</sup>	10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sup>9)</sup>	0.1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b>[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유해물질명</th> <th style="width: 30%;">허용치</th> </tr> </thead> <tbody> <tr> <td>폼알데하이드 (mg/kg) <sup>1)</sup></td> <td>20 이하</td> </tr> <tr> <td rowspan="2">유기주석화합물 (mg/kg) <sup>2)</sup></td> <td>DBT(dibutyltin)</td> <td>1.0 이하</td> </tr> <tr> <td>TBT(tributyltin)</td> <td>0.5 이하</td> </tr> <tr> <td>아릴아민 (mg/kg) <sup>3)</sup></td> <td>각각 30 이하</td> </tr> <tr> <td>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sup>4)</sup></td> <td>0.1 이하</td> </tr> <tr> <td>방염제 <sup>5)</sup></td> <td>사용하지 말 것</td> </tr> <tr> <td>총 납 함유량(mg/kg) <sup>6)</sup></td> <td><u>100 이하</u></td> </tr> <tr> <td>총 카드뮴 함유량(mg/kg) <sup>6)</sup></td> <td>75 이하</td> </tr> <tr> <td>알러지성 염료 (mg/kg) <sup>7)</sup></td> <td>각각 50 이하</td> </tr> <tr> <td>pH <sup>1)</sup></td> <td>4.0 ~ 7.5</td> </tr> <tr> <td>니켈(Ni)의 용출량 (<math>\mu\text{g}/\text{cm}^2/\text{week}</math>) <sup>8)</sup></td> <td>0.5 이하</td> </tr> <tr> <td>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sup>1)</sup></td> <td>100 이하</td> </tr> </tbody> </table>	유해물질명	허용치	폼알데하이드 (mg/kg) <sup>1)</sup>	2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sup>2)</sup>	DBT(dibutyltin)	1.0 이하	TBT(tributyltin)	0.5 이하	아릴아민 (mg/kg) <sup>3)</sup>	각각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sup>4)</sup>	0.1 이하	방염제 <sup>5)</sup>	사용하지 말 것	총 납 함유량(mg/kg) <sup>6)</sup>	<u>100 이하</u>	총 카드뮴 함유량(mg/kg) <sup>6)</sup>	75 이하	알러지성 염료 (mg/kg) <sup>7)</sup>	각각 50 이하	pH <sup>1)</sup>	4.0 ~ 7.5	니켈(Ni)의 용출량 ( $\mu\text{g}/\text{cm}^2/\text{week}$ ) <sup>8)</sup>	0.5 이하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sup>1)</sup>	100 이하	<p>- 총 납 함유량을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에서 정한 허용치에 부합화</p> <p>- (다이메틸푸마레이트) '17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간 만료로 삭제</p> <p>- 자구 변경(비고 → 주)</p> <p>- 프탈레이트 종류 및 허용치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부합화</p> <p>- 용어 수정</p> <p>- 페인팅 및 코팅의 총 납 함유량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정한</p>
유해물질명	허용치																																																									
폼알데하이드 (mg/kg) <sup>1)</sup>	2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sup>2)</sup>	DBT(dibutyltin)	1.0 이하																																																								
	TBT(tributyltin)	0.5 이하																																																								
아릴아민 (mg/kg) <sup>3)</sup>	각각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sup>4)</sup>	0.1 이하																																																									
방염제 <sup>5)</sup>	사용하지 말 것																																																									
총 납 함유량(mg/kg) <sup>6)</sup>	<u>90 이하</u>																																																									
총 카드뮴 함유량(mg/kg) <sup>6)</sup>	75 이하																																																									
알러지성 염료 (mg/kg) <sup>7)</sup>	각각 50 이하																																																									
pH <sup>1)</sup>	4.0 ~ 7.5																																																									
니켈(Ni)의 용출량 ( $\mu\text{g}/\text{cm}^2/\text{week}$ ) <sup>8)</sup>	0.5 이하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sup>1),11)</sup>	10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sup>9)</sup>	0.1 이하																																																									
유해물질명	허용치																																																									
폼알데하이드 (mg/kg) <sup>1)</sup>	2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mg/kg) <sup>2)</sup>	DBT(dibutyltin)	1.0 이하																																																								
	TBT(tributyltin)	0.5 이하																																																								
아릴아민 (mg/kg) <sup>3)</sup>	각각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sup>4)</sup>	0.1 이하																																																									
방염제 <sup>5)</sup>	사용하지 말 것																																																									
총 납 함유량(mg/kg) <sup>6)</sup>	<u>100 이하</u>																																																									
총 카드뮴 함유량(mg/kg) <sup>6)</sup>	75 이하																																																									
알러지성 염료 (mg/kg) <sup>7)</sup>	각각 50 이하																																																									
pH <sup>1)</sup>	4.0 ~ 7.5																																																									
니켈(Ni)의 용출량 ( $\mu\text{g}/\text{cm}^2/\text{week}$ ) <sup>8)</sup>	0.5 이하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mg/kg) <sup>1)</sup>	100 이하																																																									
<p><b>비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li> <li>2.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li> <li>3.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li> <li>4. 섬유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다음 표 3과 같다.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li> <li>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 BDE[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li> <li>6.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트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금속기질의 경우에는 납 기준치를 300 mg/kg 이하로 한다.</li> </ol>	<p><b>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li> <li>2.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li> <li>3. 염색한 섬유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a href="#">KS K 0147, KS K 0739</a>에 따른다.</li> <li>4. 섬유 원단에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포함)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a href="#">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a>. 단,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li> <li>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 BDE [Penta bromodiphenyl ethers],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li> <li>6.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a href="#">페인팅</a> 및 유사코팅, 기타 재료(목재 등)부분에 적용하며, 섬유 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a href="#">페인팅 및 표면코팅의 경우, 총 납 함유량 허용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a>.</li> </ol>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7. 대상물질은 <u>KS K 0736</u>에 따르고, 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이며, 염색한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8.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p> <p>9. 가죽과 모피 소재에 한하며, '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10.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능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종류</b></p> <table border="1" data-bbox="228 826 835 1157"> <thead> <tr> <th>물 질 명</th> <th>CAS No.</th> </tr> </thead> <tbody> <tr> <td>1 Di-n-octyl phthalate(DNOP)</td> <td>117-84-0</td> </tr> <tr> <td>2 Di-(2-ethylhexyl)phthalate(DEHP)</td> <td>117-81-7</td> </tr> <tr> <td>3 Butylbenzyl phthalate(BBP)</td> <td>85-68-7</td> </tr> <tr> <td>4 Dibutyl phthalate(DBP)</td> <td>84-74-2</td> </tr> <tr> <td>5 Di-iso-nonyl phthalate(DINP)</td> <td>28553-12-0</td> </tr> <tr> <td>6 Diisodecyl phthalate(DIDP)</td> <td>26761-40-0</td> </tr> </tbody> </table> <p><b>4.3 전기적 안전요건</b>  <b>4.3.1</b>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b>KC</b></p>	물 질 명	CAS No.	1 Di-n-octyl phthalate(DNOP)	117-84-0	2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3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4 Dibutyl phthalate(DBP)	84-74-2	5 Di-iso-nonyl phthalate(DINP)	28553-12-0	6 Diisodecyl phthalate(DIDP)	26761-40-0	<p>7. 대상물질은 <u>KS K 0736</u>에 따르고, 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이며, 염색한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8.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p> <p><u>&lt;삭 제&gt;</u></p> <p>9.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능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품 착용시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u>부위인 내의류, 모자류, 장갑류, 양말류, 신발류(샌들, 슬리퍼), 신생아용품(손발싸개, 배냇저고리)은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u></p> <p><u>&lt;삭 제&gt;</u></p> <p><b>5.3 전기적 안전요건</b>  <b>5.3.1</b>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b>KC</b></p>	<p>허용치에 부합화</p> <p>- 적용대상 제품군을 구체적으로 명시</p> <p>- 프탈레이트 가소제 종류는 [표 2]의 주4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p> <p>- 조항번호 변경</p>
물 질 명	CAS No.															
1 Di-n-octyl phthalate(DNOP)	117-84-0															
2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3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4 Dibutyl phthalate(DBP)	84-74-2															
5 Di-iso-nonyl phthalate(DINP)	28553-12-0															
6 Diisodecyl phthalate(DIDP)	26761-40-0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p> <p><b>4.3.2</b>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외부의 충격, 하중, 휨 변형, 관통 등에 의한 제품 파손 및 폭발 등의 사고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한 제품설명서(긴급대응가이드 포함)를 작성하여 <b>4.3.5항</b>의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p> <p><b>4.3.3</b>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p> <p><b>4.3.4</b>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p> <p><b>4.3.5</b>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b>[표시 예 1] 리튬이차전지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 예시</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li> <li>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li> <li>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li> <li>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li> <li>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li> <li>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li> </ol> </div>	<p>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p> <p><b>5.3.2</b>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외부의 충격, 하중, 휨 변형, 관통 등에 의한 제품 파손 및 폭발 등의 사고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한 제품설명서(긴급대응가이드 포함)를 작성하여 <b>5.3.5항</b>의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p> <p><b>5.3.3</b>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p> <p><b>5.3.4</b>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p> <p><b>5.3.5</b>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p> <p><b>5.3.6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1을 참고할 수 있다.</b></p> <p>&lt;[표시 예 1]을 부록 A. 1으로 이동&gt;</p>	<p>- 세부표시방법(예시)를 본문→ 부록으로 자리 이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div data-bbox="224 199 824 57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니다.</p> <p>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p> <p>8.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의(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p> <p>9.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p> </div> <p><b>5 시험방법</b></p> <p><b>5.1 일반구조</b></p> <p><b>5.1.1 작은부품 부착강도</b></p> <p><b>5.1.1.1 작은부품 시험</b>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 5.2를 따른다.</p> <p><b>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b>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5.24.6을 따른다(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p> <p><b>5.1.1.3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시험</b>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K ISO 6330(A세탁법)에 따라 세탁시험을 진행하며 이 때 개별제품의 취급시 주의사항 세탁온도 및 방법을 참고하며, 세탁온도 표시가 없는 경우는 5A 기준방법으로 세탁시험을 진행한다. 물세탁이 불가능한 드라이클리닝 제품인 경우에는 KS K ISO 3175-1로 시험을 진행한다.</p> <p><b>5.1.2 코드 및 조임핀</b> EN 14682에 따른다.</p> <p><b>5.2 유해물질 안전요건</b></p> <p><b>5.2.1 폼알데하이드</b> KS K ISO 14184-1에 따른다.</p> <p><b>5.2.2 유기주석화합물</b> KS K 0737에 따른다.</p> <p><b>5.2.3 아릴아민</b>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p> <p><b>5.2.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b>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p>	<p><b>6 시험방법</b></p> <p><b>6.1 물리적 안전요건</b></p> <p><b>6.1.1 작은부품 부착강도</b></p> <p><b>6.1.1.1 작은부품 시험</b>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제2부 5.2를 따른다.</p> <p><b>6.1.1.2 작은부품 인장시험</b>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5.24.6을 따른다(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p> <p><b>6.1.1.3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시험</b>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K ISO 6330(N세탁법)에 따라 세탁시험을 진행하며 이 때 개별제품의 취급시 주의사항 세탁온도 및 방법을 참고하며, 세탁온도 표시가 없는 경우는 4N 기준방법으로 세탁시험을 진행한다. 물세탁이 불가능한 드라이클리닝 제품인 경우에는 KS K ISO 3175-1로 시험을 진행한다.</p> <p><b>6.1.2 코드 및 조임핀</b> EN 14682에 따른다.</p> <p><b>6.2 유해물질 안전요건</b></p> <p><b>6.2.1 폼알데하이드</b> KS K ISO 14184-1에 따른다.</p> <p><b>6.2.2 유기주석화합물</b> KS K 0737에 따른다.</p> <p><b>6.2.3 아릴아민</b>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p> <p><b>6.2.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b>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p>	<p>- 조항번호 및 조항제목 변경</p> <p>- 인용표준 최신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다.</p> <p><b>5.2.5 방염제</b></p> <p><b>5.2.5.1</b>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u>KS C IEC 62321</u>에 따른다.</p> <p><b>5.2.5.2</b> TDBP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u>공급자적합성확인</u> 부속서 2(양탄자) 부속서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p> <p><b>5.2.6</b>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p> <p><b>5.2.7</b> 총 납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p> <p><b>5.2.8</b> 총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p> <p><b>5.2.9</b> 알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p> <p><b>5.2.10</b>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p> <p><b>5.2.11</b>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p> <p><b>5.2.11.1</b> NP(Nonylphenol)은 시험은 <u>안전확인 안전기준 1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u>에 따른다.</p> <p><b>5.2.11.2</b> NPEO(Nonylphenoylethylates)의 시험은 <u>ISO 18254-1</u>에 따른다.</p> <p><b>5.2.12</b> <u>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ISO/TS 161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 fumarate (DMFU) in footwear materials</u>에 따른다.</p> <p><b>6. 검사방법</b></p> <p><b>6.1 모델의 구분</b>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은 [표 1]의 종류별, 조성섬유별(충전재는 제외됨)로 구분한다. 다만, 종류와 조성섬유가 동일하더라도 섬유 원단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한다.</p> <p>* <b>비고</b> [표 1]에 따라 종류가 다르더라도 구분, 조성섬유,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동일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p> <p><b>6.2 시료채취 방법</b> 필요할 경우 시료는 <u>KS Q 1003</u>에 따라 채취한다.</p>	<p>다.</p> <p><b>6.2.5 방염제</b></p> <p><b>6.2.5.1</b>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u>KS C IEC 62321-6</u>에 따른다.</p> <p><b>6.2.5.2</b> TDBP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u>안전기준 준수 안전기준</u> 부속서 2(양탄자) 부속서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p> <p><b>6.2.6</b>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p> <p><b>6.2.7</b> 총 납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p> <p><b>6.2.8</b> 총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p> <p><b>6.2.9</b> 알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p> <p><b>6.2.10</b>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p> <p><b>6.2.11</b>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p> <p><b>6.2.11.1</b> NP(Nonylphenol)의 시험은 <u>안전확인 안전기준 1(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u>에 따른다.</p> <p><b>6.2.11.2</b> NPEO(Nonylphenoylethylates)의 시험은 <u>ISO 18254-1</u>에 따른다.</p> <p>&lt;삭 제&gt;</p> <p><b>7. 검사방법</b></p> <p><b>7.1 모델의 구분</b>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은 [표 1]의 종류별, 조성섬유별(충전재는 제외됨)로 구분한다. 다만, 종류와 조성섬유가 동일하더라도 섬유 원단의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부합하는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한다.</p> <p><b>주</b> [표 1]에 따라 종류가 다르더라도 구분, 조성섬유,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동일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p> <p><b>7.2 시료채취 방법</b> 필요할 경우 시료는 <u>KS Q 1003</u>에 따라 채취한다.</p>	<p>- 국제표준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현행화</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안전기준 제·개정 사항 반영</p> <p>- (다이메틸푸마레이트) ‘17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간 만료로 이에 따른 시험방법도 삭제</p> <p>- 조항번호 변경</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6.3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 4]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4] 시료의 크기 및 판정</b></p> <table border="1" data-bbox="228 331 837 443"> <thead> <tr> <th>시료의 크기(n)</th> <th>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갯수(Ac)</th> <th>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갯수(Re)</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d>1</td> </tr> </tbody> </table> <p>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p> <p><b>7. 표 시</b></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르고,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시료의 크기(n)	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갯수(Ac)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갯수(Re)	1	0	1	<p>7.3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 3]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3] 시료의 크기 및 판정</b></p> <table border="1" data-bbox="1034 331 1644 443"> <thead> <tr> <th>시료의 크기(n)</th> <th>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 갯수(Ac)</th> <th>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 갯수(Re)</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d>1</td> </tr> </tbody> </table> <p>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p> <p><b>8.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b></p> <p>8.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b>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르고,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표시사항을 따른다.</b>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단,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p> <p>8.2 유아가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b>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 제2부. 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표 4](1)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b></p> <p>8.3. 유아가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b>[표 4](2)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b></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4] 취급상 주의표시</b></p> <p>(1) 유아가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주의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945 1248 1742 1343">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취급상 주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td> </tr> </tbody> </table>	시료의 크기(n)	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 갯수(Ac)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 갯수(Re)	1	0	1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안전기준 제·개정 사항 반영</p> <p>-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별표 8](9) 및 (10)의 유아동용 섬유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를 이 안전기준으로 이동</p>
시료의 크기(n)	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갯수(Ac)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갯수(Re)														
1	0	1														
시료의 크기(n)	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 갯수(Ac)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불합격 갯수(Re)														
1	0	1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2) 유아가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u></p> <table border="1" data-bbox="945 288 1733 387"> <tr> <td data-bbox="945 288 1733 336" style="text-align: center;"><b>취급상 주의사항</b></td> </tr> <tr> <td data-bbox="945 336 1733 387" style="text-align: center;">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td> </tr> </table>	<b>취급상 주의사항</b>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b>취급상 주의사항</b>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p>부속서 A(Nonylphenols(NPs) 정량방법 ~ 부속서 B(다이메틸푸마레이트 정량방법) ----- (생략) -----</p>	<p>부속서 A(Nonylphenols(NPs) 정량방법 ~ 부속서 B(다이메틸푸마레이트 정량방법) ----- (상동) -----</p>								
	<p style="text-align: center;"><b><u>부록 A. 세부 표시방법(예시)</u></b></p> <p><b><u>A.1. 서론</u></b> 이 세부 표시방법(예시)은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품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p> <p><b><u>A.2. 세부 표시방법(예시)</u></b></p> <p><b><u>A.2.1 리튬이차전지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예시)</u></b></p> <table border="1" data-bbox="945 951 1720 1481"> <tr> <td data-bbox="945 951 1720 1023">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td> </tr> <tr> <td data-bbox="945 1023 1720 1094">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td> </tr> <tr> <td data-bbox="945 1094 1720 1134">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td> </tr> <tr> <td data-bbox="945 1134 1720 1206">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td> </tr> <tr> <td data-bbox="945 1206 1720 1326">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td> </tr> <tr> <td data-bbox="945 1326 1720 1398">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 data-bbox="945 1398 1720 1481">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td> </tr> </table>	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	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	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p>- 세부표시방법(예시)를 본문→ 부록으로 자리 이동</p>
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									
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									
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8.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의(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u></p> <p><u>9.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u></p>	

## 신구조문 대비표(어린이제품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아동용 섬유제품</b> (Textile products for children)</p>	<p><b>아동용 섬유제품</b> (Textile products for children)</p>	
<p><b>1. 적용범위</b> 이 기준은 "3.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u>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u></p>	<p><b>1. 적용범위</b> 이 기준은 <u>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u>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u>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제외하며,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가장복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u></p>	<p>- 아동용 섬유제품의 사용연령을 설명</p> <p>- 기간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놀이용 가장복을 적용대상에서 제외</p>
<p><b>2. 인용표준</b>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li> <li>· KS K ISO 3071 텍스타일-수성 추출액의 pH 측정</li> <li>·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li> <li>·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li> <li>·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li> <li>· KS K 0739 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li> <li>· 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 : 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 (cleanability) 평가방법</li> <li>· 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li> <li>·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li> <li>· ISO 18254-1 Textiles-Method for the detection and determination of alkylphenoethoxylates (APEO)-Part1 : Method using HPLC-MS</li> </ul>	<p><b>2. 인용표준</b>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li> <li>· KS K ISO 3071 텍스타일 -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li> <li>·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 <u>폼알데하이드</u>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u>폼알데하이드</u>(증류수 추출법)</li> <li>·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li> <li>·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li> <li>· KS K 0739 섬유제품 -<u> </u>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u> </u>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li> <li>· KS K ISO 3175-1 텍스타일 -<u> </u> 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 -<u> </u> 제1부 : 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 (cleanability) 평가방법</li> <li>· KS K ISO 6330 텍스타일 -<u> </u> 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li> <li>·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u> </u> 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 -<u> </u> Specifications</li> <li>· ISO 18254-1 Textiles-<u> </u> Method for the detection and determination of alkylphenoethoxylates (APEO) -<u> </u> Part1 : Method using HPLC-MS</li> </ul>	<p>- 표준명 표시양식을 KS 표준체제와 부합화</p> <p>- 영문의 국문표기 정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li> <li>·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li> <li>·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li> <li>·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li> <li>·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li> </ul> <p>3. 용어의 정의</p> <p>3.1 “아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피부 직접 접촉제품, 피부 간접 접촉제품을 말하며, 제품 분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p> <p>3.2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이동&gt;</p>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KS C IEC 62321-6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6부: GC-MS에 의한 고분자 내 존재하는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의 분석</a></li> <li>·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li> <li>·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li> <li>·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li> <li>· <a href="#">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a></li> <li>· <a href="#">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a></li> <li>·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li> <li>· <a href="#">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a></li> </ul> <p>3. 용어의 정의</p> <p>&lt;삭 제&gt;</p> <p>&lt;이동 : 3.2항 → 3.5항&gt;</p> <p>3.1. “섬유제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피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p> <p>3.2 “조성섬유”라 함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을 말한다.</p> <p>3.3 “혼용률”이라 함은 조성섬유가 2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 (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p> <p>3.4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3.5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a href="#">소방청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a>에 적합하여야 한다.</p> <p>3.6 “맞춤복”이라 함은 개인을 위해 형태, 재료, 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p>	<p>-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방염물질 시험방법추가</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안전기준 제·개정 사항 반영</p> <p>-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p> <p>- (3.1항) → (1. 적용 범위) 및 (4. 세부 분류)항으로 내용 이동</p> <p>- 3.5항으로 이동</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내용을 이 기준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그대로 인용</p> <p>- 이동 : 3.2항 → 3.5항</p>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p>	<p>주문·제작하는 의복을 말한다.</p> <p>4. 세부분류 아동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는 [표 1]을 적용한다. 다만, [표 1]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동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를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아동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p> <table border="1" data-bbox="996 555 1825 150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의의류</td> <td>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 점퍼, 조끼, 토퍼, 우주복, 카디건,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 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td> </tr> <tr> <td>중의류</td> <td>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손수건, 목욕장갑, 삼푸캡,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sup>1)</sup></td> </tr> <tr> <td>내의류</td> <td>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복대</td> </tr> <tr> <td>침구류</td> <td>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sup>2)</sup>는 제외) 오,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펫(면적 1 m<sup>2</sup> 미만),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td> </tr> <tr> <td>신발류</td> <td>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가죽 제품류에서 관리))</td> </tr> <tr> <td>양말류</td> <td>양말, 타이츠,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 보호대</td> </tr> <tr> <td>장갑류</td> <td>장갑, 팔토시</td> </tr> <tr> <td>모자류</td> <td>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td> </tr> <tr> <td>가방류</td> <td>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td> </tr> <tr> <td>기타 제품류</td> <td>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등</td> </tr> </tbody> </table>	구분	종류	의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 점퍼, 조끼, 토퍼, 우주복, 카디건,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 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손수건, 목욕장갑, 삼푸캡,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sup>1)</sup>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복대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 <sup>2)</sup> 는 제외) 오,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펫(면적 1 m <sup>2</sup> 미만),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타이츠,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 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기타 제품류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등	<p>- 현행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세부분류를 정리하여 아동용 섬유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표로 정리, 가독성을 높임</p> <p>-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사항 반영</p>
구분	종류																							
의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울, 점퍼, 조끼, 토퍼, 우주복, 카디건,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 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체조복, 체육복,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손수건, 목욕장갑, 삼푸캡,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sup>1)</sup>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복대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 <sup>2)</sup> 는 제외) 오,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펫(면적 1 m <sup>2</sup> 미만),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타이츠,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 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기타 제품류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커튼 등																							

현행	개정안	비고								
<p>4. 안전요건</p> <p>&lt;신 설&gt;</p> <p>4.1 코드 및 조임끈 (4.1.1 참조)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p> <p>4.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제외하는 문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에서 밀창은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p>주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을 추가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p> <p>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제4부. 바닥매트를 따른다.</p> </td> </tr> <tr> <td colspan="2"> <p>5. 안전요건</p> <p>5.1 물리적 안전요건</p> <p>5.1.1 코드 및 조임끈 (6.1.1 참조)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p> <p>5.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부분도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으로 본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범위에서 밀창은 제외한다.</p>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p> </td> </tr> </tbody> </table>	구분	종류	<p>주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을 추가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p> <p>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제4부. 바닥매트를 따른다.</p>		<p>5. 안전요건</p> <p>5.1 물리적 안전요건</p> <p>5.1.1 코드 및 조임끈 (6.1.1 참조)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p> <p>5.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부분도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으로 본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범위에서 밀창은 제외한다.</p>		<p>[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p>		<p>- 조항번호 변경 및 세부 조항별 제목 추가</p> <p>- 조항 번호 수정 및 항목 추가</p> <p>-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문구 수정</p> <p>- 표번호 변경</p> <p>- 총 납 기준치 완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과 부합화)</p>
구분	종류									
<p>주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을 추가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p> <p>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제4부. 바닥매트를 따른다.</p>										
<p>5. 안전요건</p> <p>5.1 물리적 안전요건</p> <p>5.1.1 코드 및 조임끈 (6.1.1 참조)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EN 14682에 따르되 대상 연령은 만 13세 이하로 한다.</p> <p>5.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과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부분도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대상으로 본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범위에서 밀창은 제외한다.</p>										
<p>[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p>										





현행	개정안	비고												
<p>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p> <p>9.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능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u>제품</u>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p> <p>10.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11. 가죽과 모피 소재에 한하며, '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p> <p>9.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능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u>내의류, 모자류, 장갑류, 양말류, 신발류(샌들, 슬리퍼)의 섬유 부위 중</u>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p> <p>10.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스포츠용 마스크</p> <p>안전기준 제정사항반영</p> <p>- 프탈레이트 가소제 종류는 [표 2]의 주3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p>												
<p>&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종류</b></p>	<p>&lt;삭제&gt;</p> <p>11.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는 추가적으로 「<u>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u>」 <u>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 조항번호 수정</p> <p>- 현행 안전기준 4.3에서 인용한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4.3 전기적 안전요건의 내용을 그대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60%;">물 질 명</th> <th style="width: 30%;">허용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Di-(2-ethylhexyl)phthalate(DEHP)</td> <td style="text-align: center;">117-81-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Butylbenzyl phthalate(BBP)</td> <td style="text-align: center;">85-68-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Dibutyl phthalate(DBP)</td> <td style="text-align: center;">84-74-2</td> </tr> </tbody> </table>		물 질 명	허용치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p>&lt;삭제&gt;</p>	<p>기술</p>
	물 질 명	허용치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p><b>4.3 전기적 안전요건</b></p> <p>아동용 섬유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은 「<u>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u>」 <u>안전확인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의 4.3 전기적 안전요건</u>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p>	<p><b>5.3 전기적 안전요건</b></p> <p><b>5.3.1</b> 섬유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u>KC 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u></p> <p><b>5.3.2</b>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외부의 충격, 하중, 휨 변형, 관통 등에 의한 제품 파손 및 폭발 등의 사고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구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한 제품설명서(긴급대응가이드 포함)를 작성하여 <u>5.3.5항의 주의경고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u></p> <p><b>5.3.3</b>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p> <p><b>5.3.4</b>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p> <p><b>5.3.5</b>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p>	<p>- 예시 추가</p> <p>- 조항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b>4.4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b></p> <p>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외국 기관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 적합성확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b>5 시험방법</b></p> <p><b>5.1 일반구조</b></p> <p><b>5.1.1 코드 및 조임끈 EN14682에 따른다.</b></p> <p><b>5.1.2 자석과 자석부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5.2 유해물질 안전요건</b></p> <p><b>5.2.1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b></p> <p><b>5.2.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에 따른다.</b></p> <p><b>5.2.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b></p> <p><b>5.2.4 프탈레이트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5.2.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b></p> <p><b>5.2.6 방염제</b></p> <p><b>5.2.6.1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에 따른다.</b></p> <p><b>5.2.6.2 TDBPP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2(양탄자) 부속서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b></p> <p><b>5.2.7 총 납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5.2.8 총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5.2.9 알려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b></p> <p><b>5.2.10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b></p>	<p><u>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u></p> <p><u>5.3.6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2.1을 참고할 수 있다.</u></p> <p><b>5.4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b></p> <p>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외국 기관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 적합성확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b>6 시험방법</b></p> <p><b>6.1 물리적 안전요건</b></p> <p><b>6.1.1 코드 및 조임끈 EN14682에 따른다.</b></p> <p><b>6.1.2 자석과 자석부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6.2 유해물질 안전요건</b></p> <p><b>6.2.1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b></p> <p><b>6.2.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에 따른다.</b></p> <p><b>6.2.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b></p> <p><b>6.2.4 프탈레이트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6.2.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b></p> <p><b>6.2.6 방염제</b></p> <p><b>6.2.6.1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6에 따른다.</b></p> <p><b>6.2.6.2 TDBP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양탄자) 부속서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b></p> <p><b>6.2.7 총 납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6.2.8 총 카드뮴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b></p> <p><b>6.2.9 알려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b></p> <p><b>6.2.10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에</b></p>	<p>- 조항번호 변경 및 조항명 변경</p> <p>- 인용표준의 개정 반영</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단계 수정</p> <p>- 자구 수정</p> <p>- [표 2]의 주 12 삭제에 따라 관련 시험방법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5.2.11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p> <p>5.2.11.1 NP(Nonylphenol)은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1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에 따른다.</p> <p>5.2.11.2 NPEO(Nonylphenolethylates)의 시험은 ISO 18254-1에 따른다.</p> <p>5.2.12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ISO/TS 161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 fumarate (DMFU) in footwear materials에 따른다.</p> <p>6. 표시사항</p>	<p>따른다.</p> <p>6.2.11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p> <p>6.2.11.1 NP(Nonylphenol)의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1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에 따른다.</p> <p>6.2.11.2 NPEO(Nonylphenolethylates)의 시험은 ISO 18254-1에 따른다.</p> <p>&lt;삭제&gt;</p>	<p>-조항명 및 조항번호 변경</p>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단계 수정 및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p>
<p>「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르고,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단,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7.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p> <p>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다만,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표시사항을 따른다.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단,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p> <p>7.2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 제2부. 4.2 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표 3](1)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3.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표 3](2)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3] 취급상 주의표시</b></p> <p>(1)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주의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b>취급상 주의사항</b></p> <p>“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p> </div>	<p>-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별표 8](9) 및 (10)의 유아동용 섬유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를 삭제하고 이 안전기준으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2)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999 260 1834 360"> <tr> <td data-bbox="999 260 1834 312" style="text-align: center;"><b>취급상 주의사항</b></td> </tr> <tr> <td data-bbox="999 312 1834 360" style="text-align: center;">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부록 A. 세부 표시방법(예시)</b></p> <p><b>A.1. 서론</b> 이 세부 표시방법(예시)은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품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p> <p><b>A.2. 세부 표시방법(예시)</b></p> <p><b>A.2.1 리튬이차전지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예시)</b></p> <table border="1" data-bbox="999 1193 1834 1495"> <tr> <td data-bbox="999 1193 1834 149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li> <li>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li> <li>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li> <li>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li> <li>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li> </ol> </td> </tr> </table>	<b>취급상 주의사항</b>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li> <li>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li> <li>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li> <li>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li> <li>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li> </ol>	<p>- 예시 추가</p>
<b>취급상 주의사항</b>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li> <li>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li> <li>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li> <li>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li> <li>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li> </ol>					

현행	개정안	비고
	<p><u>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u></p> <p>6. <u>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u></p> <p>7. <u>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u></p> <p>8. <u>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의(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u></p> <p>9. <u>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u></p>	